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



복지사각지대란?

- 국가,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**복지 소외 계층**
  - 실직, 휴 · 폐업,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
  - 전기, 가스,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
  - 돌봄이 필요한 위기 · 취약 1인 가구 등



어디로 알려야 하나요?

- **수원시 복지협력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**
- **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(☎1566-4129)**
- **보건복지콜센터(☎129)**
- **복지로(www.bokjiro.go.kr → 도움신청하기)**

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- 긴급복지,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**공적급여지원**
-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 등의 경우 **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** 하여 지속 관리
-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, **방문 상담 및 후원물품 등 지원**

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



요금감면 서비스 신청

- 대상 :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

신청 방법

- **전기요금** : 한국전력(cyber.kepco.co.kr), 고객센터(☎123)
- **이동통신요금*** : 통신사 대리점 방문 (*기초연금 수급자도 감면 대상)
- **도시가스요금** :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 혹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**지역난방비** : 한국지역난방공사(www.kdhc.co.kr), 고객센터(☎1688-2488)

긴급복지 지원



위기 상황과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

위기 상황

1.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
2.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3. 가족으로부터 방임 · 유기되거나 학대 등
4.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5.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6.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 - 기초수급 중지, 단전, 수도 · 가스 중단 등
7.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   - 실직, 이혼, 단전,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등

소득 · 재산기준 ('19. 1. 1.~)

- **소득** : 기준중위소득 75%이하(4인가구기준 약 346만원)
- **재산** : 118백만원 이하
- **금융재산** : 500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)

지원금액('19. 1. 1.~)

- 생계지원 : 월 약 119만원(4인 가구)
- 의료지원 한도액 : 300만원 이내
- 주거지원 한도액 : 월 약42만원(4인 가구)
- 연료비 지원금액 : 월 98,000원
- 그 외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, 교육지원, 해산 · 장제비,전기요금 지원 실시

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

-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  ⇒ **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(4인기준 4,152천원)**
- (재산) 150백만원 이하 ⇒ **242백만원 이하**
- **(금융재산) 500만원 이하 ⇒ 1,000만원 이하**

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신청



위기 상황과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

- **신청대상** :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
- **신청방법** :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- **신청방법** :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하는 가구

급여종류별 선정기준(소득인정액)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생계 (중위 30%)	512,102	871,958	1,128,010	1,384,061	1,640,112	1,896,163	2,152,214
의료 (중위 40%)	682,803	1,162,611	1,504,013	1,845,414	2,186,816	2,528,218	2,869,619
주거 (중위 44%)	751,084	1,278,872	1,654,414	2,029,956	2,405,498	2,781,039	3,156,580
교육 (중위 50%)	853,504	1,453,264	1,880,016	2,306,768	2,733,520	3,160,272	3,587,024

※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- **선정절차** : 상담.신청(동 행정복지센터) ⇒ 조사(구) ⇒ 결정(시)
- **처리기한** : 30일 (60일까지 연장가능)
- **지원내용** : 선정된 급여 지원

급여명	지원내역
생계급여	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인정액
의료급여	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, 2종 보호
주거급여	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 수선 유지 급여
교육급여	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료, 수업료, 교과서대 등